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54
----------	------

2024년 4월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3일, 박춘선 의원 외 17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박춘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정의하고, 시장이 산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교육 지역계획 수립시 유아숲지도사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 주요골자

- 1) 산림교육전문가 정의(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등)(안 제2조제3호 신설)

- 2) 유아숲 운영계획에 유아숲지도사 배치, 교육 등 활용방안 포함(안 제4조제5호 신설)
- 3) 산림교육전문가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행 시 유아숲지도사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1월 제정¹⁾되었음.
- 법 제10조²⁾에서는 산림교육전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법 시행령 제12조³⁾에 따라

1)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시행 2020. 1. 9.] [서울특별시조례 제7484호, 2020. 1. 9., 제정]

2)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별표 2(붙임참조)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서울시의 정책 현황에 맞게 반영하여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정의(안 제2조제3호)하고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하며, 매년 수립·시행하는 ‘유아숲 체험 시설 운영계획’에 유아숲지도사 배치, 교육 등 활용방안을 포함(안 제4조 제5호)하는 것으로 산림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산림교육전문가 배치기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6. 8.>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제12조 관련)

산림전문가	배치시설	배치기준
숲해설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명 이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명 이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의 숲	1명 이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2명 이상
	「산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태숲 (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숲 및 생활숲	1명 이상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국립공원은 제외한다)	1명 이상
유아숲지도사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유아숲체험원	별표 3 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운영인력의 배치기준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숲지도사 활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1명 이상
숲길등산지도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1명 이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명 이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2명 이상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국립공원은 제외한다)	1명 이상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산림교육” 이란”을 ““산림교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교육” 이란”을 “교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유아숲체험원” 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유아동네숲터” 란”을 ““유아동네숲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체험시설” 이란”을 “체험시설”이란”으로 한다.

3.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아숲지도사 배치, 교육 등 활용방안

제6조제2항제1호 중 “5천㎡ 이상으로 한다”를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천㎡미만이며”를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300㎡ 이상으로 한다”를 “3백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활용 등) 시장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산림교육”</u>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p> <p><u><신 설></u></p> <p>3. <u>“유아숲 교육”</u>이란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p> <p>4. <u>“유아숲체험원”</u>이란 「<u>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u>」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산림교육”</u>이란 ----- ----- ----- ----- -----.</p> <p>3. <u>“산림교육전문가”</u>란 「<u>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u>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u>에서 <u>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u>를 말한다.</p> <p>4. ----- <u>교육</u>”이란 ----- ----- ----- ----- -----.</p> <p>5. <u>“유아숲체험원”</u>이란 법 제12조 제1항----- -----</p>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유아동네숲터”란 별도의 인공 시설 설치없이 유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자연그대로의 공간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접하며 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6. “유아숲 체험시설”이란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도록 제공하는 시설로써, 유아숲체험원과 유아동네숲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해마다

-----.

6. “유아동네숲터”란 -----

-----.

7. ----- 체험시설”이란 -----

-----.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립·시행해야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제6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 체험시설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 5천m² 이상으로 한다.

2. 유아동네숲터 : 5천m²미만이며, 최소 면적은 300m² 이상으로 한다.

③ (생략)

<신설>

제7조 ~ 제9조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5. 유아숲지도사 배치, 교육 등 활용 방안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6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천제곱미터 이상

2. ----- 5천제곱미터 미만----- 3백제곱미터 이상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활용 등)

시장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